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49
----------	-------

발의연월일 : 2025. 9. 29.

발 의 자 : 진성준 · 모경중 · 문정복
이정문 · 김태년 · 박홍배
이용우 · 황명선 · 서영석
임오경 · 문대림 · 조정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1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15%를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3년까지는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었으나, 2014년부터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상향된 후 한도액의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세액공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보험료로 소진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저출생 심화에 따라 출산장려 문화 조성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태아·자녀를 위한 보험에 대하여 별도의 공제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

는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제2호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2.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u>2.</u>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u>제1호</u>에 따른 <u>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u>는 제외한다) ② ~ ⑪ (생략)	<u>다)</u> <u>3.</u> ----- ----- -----<u>제1호</u> 및 <u>제2호</u>----- --<u>보험료</u>----- ② ~ ⑪ (현행과 같음)
---	---